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09년 2월에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다(이효성, 2009).

2.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

1) 2005년 제정 언론중재법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문법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100분의 3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뉴스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작은 인터넷 매체는 물론 뉴스 전달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배치를 통해 여론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털들이 조정·중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김서중, 2006).

또한 인터넷신문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 역시 인터넷신문들에 의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신문에 난 기사가 누리꾼들에 의해 곳곳으로 퍼 날라지거나, 댓글로 인해 그 피해가 상승하였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현재 법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은 물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체 수용 양식이 신문이나 방송과 다른 인터넷에 게재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수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적다. 방송은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종이신문은 신문을 넘기는 한 수용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할 가능

성이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목만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목이 보인다 하더라도 수용자들이 제목을 클릭하여 제목 이외의 부분까지 읽어 나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김서중, 2006).

그동안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가 조정·중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독자적 기사 생산이라는 기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문법의 ‘독자적 기사 생산’은 그야말로 공급자 측면에서의 관점일 뿐이다. 더구나 시행령에서는 이 기준을 30% 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포털이 인터넷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기사를 자체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의 출처에 무관심하며, 단지 그 포털의 기사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비단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인터넷언론은 대부분의 경우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다. 자신의 특화된 분야의 뉴스만 생산하고, 나머지 뉴스들은 제휴사의 콘텐츠로 편집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언론 환경의 현실과 맞지 않은 ‘독자적 기사 생산 30% 이상’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많은 인터넷 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김서중, 2006).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당시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표 1 참조). 결국 2005년 당시 중재법이 인터넷신문을 포함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표 1> 인터넷신문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2005년 이후)

기 간	조정신청	중재신청
2009년 1~5월 현재	81	13
2008년 1~12월	157	3
2007년 1~12월	113	0
2006년 1~12월	77	0
2005년 1~12월	48	0

출처: 이효성(2009)

2)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해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 언론중재법이 안고 있던 언론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효성, 2009).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 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효성, 2009).

이처럼 개정 언론중재법은 적용매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중재결정의 취소, △정정보도청구의 소, △시정권고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정남철, 2009).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는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결정의 취소-개정 언론중재법은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또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 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간이 소명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토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으로서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청구에 비해 정정보도 청구가 갖는 의미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언론중재법이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했다는 점은 특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시정권고-시정권고와 관련,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제3자 시정권고 신청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3. 인터넷 공간의 뉴스생산과 유통 현황